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규약/규정

- 1 단체협약(언론노조 KBS본부/KBS노조 등 통합 단협) ----- 별책
(2012년 12월 재정)
- 2 언론노조 KBS본부 운영규정 ----- 2
(2018년 5월 17일 개정)
- 3 언론노조 KBS선거관리규정 세칙 ----- 13
(2010년 8월 9일 개정)
- 4 언론노조 KBS본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26
(2011년 10월 31일 제정)
- 5 언론노조 KBS본부 기금운영 세칙 ----- 28
(2016년 2월 24일 개정)
- 6 언론노조 KBS본부 경조금 지급 운영세칙 ----- 30
(2016년 2월 24일 제정)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운영규정

2009년 12월 16일 제정
2011년 1월 26일 개정
2011년 8월 9일 개정
2016년 2월 24일 전면 개정
2017년 3월 27일 개정
2017년 11월 17일 개정
2018년 5월 17일 개정
2018년 1월 1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11조에 따라 이 운영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 본 본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BROADCASTING SYSTEM LABOR UNION'(KBS L.U)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한국방송 내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본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본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언론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2. 본부는 본부에 국한되어 해결해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1) 본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 2) 본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 3) 본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 4) 기타 본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5조의2(법인) 본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8.1.17>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본부는 KBS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강령과 규약 및 본부의 규정에 찬동하고 조합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7조(산하 조직) 본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하 조직을 둔다. <개정 17.11.17>

1. 본사의 경우 조합원들의 소속과 업무, 직종 등을 고려하여 구역을 둔다. <개정 17.11.17>
2. 지역의 경우 총국 또는 지국 단위로 조합원의 수, 거리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부를 두되, 총국 관할 지역국의 조직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장이 해당 지역국에 부지부장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7.11.17>, <개정 19.4.4>
3. 조직 설립, 통합, 분할에 관한 건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가 관할 운용한다. <개정 18.5.17>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본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4조에서 정한 권리를 본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9조(의무) 본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본부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 본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공정방송추진위원회(민주언론실천위원회)
6. 특별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자문위원회
9. 성평등위원회<개정 18.5.17>, <개정 18.1.17>

제1절 총회

제11조(구성 및 소집) 본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본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소집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본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본부의 조합원 총회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소집공고) 본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 본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부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모든 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본부의 쟁의행의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안 가결
10.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본부(지부) 규칙(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위 2호와 3호, 5호, 6호, 7호, 9호, 10호, 11호, 12호는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본부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본부장이 소집한다.
2.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부장이 소집한다.<개정 18.5.17>
3. 임시대의원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 1)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부장이 소집한다.

제15조(소집공고) 본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본부 대의원 선출기준) 본부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본부 대의원은 각 구역과 지부의 조합원 30명당 1명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원이 30명 미만인 구역이나 지부에는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개정

18.5.17>

2. 선출직 본부 대의원은 해당 구역 및 지부 조합원 15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로 선출한다.<개정 18.5.17>
3. 본부 대의원의 등록과 변경은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개정 18.5.17>
4. 본부장, 수석부분부장, 부분부장은 당연직 본부 대의원이 되며 본부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18.5.17>

제18조(심의 및 의결) 본부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부장, 수석부분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승인,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본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0. 본부 규칙(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19조(구성)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 중앙위원과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중앙위원은 본부장, 수석부분부장, 부분부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2. 선출직 중앙위원은 본부의 구역 및 지부장으로 한다.

제20조(소집 및 공고)

1. 정기 중앙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중앙위원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중앙위원회의 소집 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회일 2일 전까지 변경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 없이 소집할 수 있고 사유에 대하여 해당 중앙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음으로써 중앙위원회가 유효하게

성립된다.

제21조(기능)

1.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구역, 시·도지부, 분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본부 임원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4.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조합 활동 중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8.5.17>, <개정 18.1.17>
9. 본부 예산의 항목 간 전용에 관한 사항
10. 구역, 시·도지부, 분회 및 협의회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18.5.17>
11. 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개정 18.5.17>
12. 본부 산하조직 설립, 분할 및 통합에 관한 사항<개정 18.5.17>
13. 기타 중요한 사항<개정 18.5.17>

제22조(선출 및 임기)

1. 중앙위원은 해당 구역 및 지부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에 의하거나, 또는 해당 구역 및 지부 조합원의 과반수 서명에 의한 동의로 선출한다.
2.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생기면 해당 분기 안에 1항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구역 대의원 중 1인이 대행한다. 보궐 대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개정 18.5.17>, <개정 18.1.17>
3.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직과 촉탁직은 팀장급 이상, 방송음악직은 수석파트장급 이상의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중앙위원에 입후보 할 수 없으며, 중앙위원이 임기 도중 보직자로 임용되었을 때는 당연 해임된다.<개정 19.4.4>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집행위원회는 본부장, 수석부분부장, 부분부장, 사무처장, 중앙위원(시·도지부장), 각 실·국장(위원), 공정방송추진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및 공고)

1. 집행위원회는 연 12회 이내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집행위원회는 본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개정 18.5.17>
2. 집행위원회의 소집 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회일 2일 전까지 변경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 없이 소집할 수 있고 사유에 대하여 해당 집행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음으로써 집행위원회가 유효하게 성립된다.<개정 18.5.17>

제25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쟁의대책 수립
7. 제반 본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조합 대의원 선출 및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개정 17.3.27>
9. 기타 본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제26조(구성)

1. 본부는 방송의 독립과 민주언론의 실천을 위해 공정방송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를 설치한다. 지부는 각 지역별 공추위를 둔다.
2. 공추위 위원은 보도와 TV, 라디오 부문 각 1명씩 본부장이 임명하되 필요시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단 지역 공추위 위원은 시·도지부장이 위촉한다.
3. 공추위 위원장은 수석부본부장이 겸임하며, 위원들의 호선으로 공추위 대표위원(공정방송실장)을 뽑는다.<개정 19.6.18>

제27조(활동)

1. 공추위는 편집권 독립과 민주언론 실천을 위해 활동한다.
2. 공추위는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언론을 감시함으로써 이들이 공정한 언

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공추위는 민주언론을 위한 자체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제6절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제28조 특별위원회

1. 본부장 직속으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둘 수 있다.
2. 특위는 총회와 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특별 사안을 다루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 위원회의 활동 상황과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제29조 선거관리위원회

1. 본부의 공정한 선거와 투표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 선관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세부규칙을 마련하여 따른다.

제30조 자문위원회

1. 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 및 조합의 전직 임원과 조합 파견을 마친 자를 조합의 고문으로 위촉하고 이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17.3.27>
2. 자문위원회는 조합의 정책 결정과 운영에 대하여 건의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 31조 성평등위원회<개정 18.5.17>, <개정 18.1.17>

1. 본부는 사내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범죄 예방 및 발생시 적절한 대처와 진상조사 처벌요구를 위한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를 둘 수 있다.
2. 성평등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세부규칙을 마련하여 따른다.

제7절 회의

제32조(성립과 결의)

1. 본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혹은 대의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총회와 대의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신설 17.3.27>
3. 회의 참석은 본인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의원회·중앙위원회의 경우 의원 및 위원이 불참시, 해당 구역 조합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1인을 대리할 수 있다. <개정 18.1.17>

제33조(특별결의) 본부의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써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정의 개정
2. 본부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34조(임원) 본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1명
2. 본부 수석부본부장 1명
3. 부분부장 약간 명
4. 사무처(국)장 1명
5. 회계감사 2명 이상

제35조(임무) 본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 1) 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4) 본부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 5) 본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6) 본부 각 국(실)장, 부(차)장의 제청권을 갖는다. 단, 위원장(본부장)이 이를 본 부장에 위임할 경우 본부장이 본부 간부를 임면한다.
 - 7) 본부장은 당연직 조합의 중앙위원과 대의원이 된다.
 - 8) 본부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본부 수석부분부장 :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을 대리한다.
3. 본부 부분부장 : 본부장, 수석부분부장을 보좌하며, 수석부분부장의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18.5.17>
4. 사무처(국)장
 - 1)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또는 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본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과 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조합에 7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36조(선출) 임원 등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장과 수석부분부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 세칙에 따른다.
2. 나머지 임원 선출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단 사무처장의 경우 본부장이 지명한 뒤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산하조직 대표의 선출은 해당 조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 또는 해당 조직 조합원 과반수의 서명에 의한 동의로 선출한다.
4. 보선
 - 1) 본부는 임원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 2) 이 경우 본부는 총회(대의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3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6장 부서

제38조(부서) 부서는 총무국, 조직국, 정책실, 편집국을 포함한 10개 이내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조합의 처무규정에 준한다.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9조(단체협약의 체결) 본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본부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8장 재정 및 기타

제40조(재정) 본부의 재정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41조(기금) 본부는 본 운영규정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된 목적과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가운데 일부를 떼어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7.3.27>

제42조(본부 운영세칙) 본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세칙에 대해서는 본부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조합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4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 조합원 총회(또는 본부 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조합 본부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45조(회계연도) 본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본부 대의원회에서 제(개)정하여 조합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지부) 선거관리 규정세칙

2011년 8월 9일 제6차 대의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노조 규약 제34조 및 본부 운영규정 제32조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원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부 규정 제29조 1, 2호에서 규정하는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권) 임원 선거권은 본부 규정 제6조에 의한 본부 조합원에 있다.

제4조(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본부규정 제6조에 의한 본부 조합원에게 있다. 단, 조합규약 제17조 및 제52조에 따라 제명, 정권, 권리 제한된 조직의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실시시기) 임원 임기 만료 15일 이전에 차기 임원선출을 완료한다. 현 임원과 당선자는 임기 시작 일 이전에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처 선거중립) 사무처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립을 지킨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전까지 5인 이내의 위원을 선출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5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5. 집행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고 제반 선거사무에 대해 우선 협조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9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는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절 입후보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를 공고해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일은 선거일 25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1조(입후보 등록) 본부장, 수석부분부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신청서(별첨 양식)를 제출해야 한다. 단, 본부장, 수석부분부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해야 한다.

제12조(추천인)

1. 본부장, 수석부분부장에 입후보하는 조는 대의원 15명 이상 50명 이내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다른 입후보 조에 대한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2. 본부 소속 대의원 과반의 의결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이유로 경선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제13조(재등록 공고 등)

1. 본부장, 수석부분부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해야 한다.
2.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본부장, 수석부분부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자격심사)

1.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선포 전 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15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해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정견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9조(선거선전물 발행)

1. 후보자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 때 선관위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선관위는 선거선전물의 가지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선관위가 지정하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관위가 주관하고 해당비용은 본부에서 지출한다.

제20조(합동연설회 등)

1.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경선시는 후보자간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와 후보자간 토론회 개최시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회 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해 시행한다.

제21조(유세활동비 지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유세활동비로 임원 입후보자 당 200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22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23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본부의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4조(투표소) 투표소는 회의장 내에 설치한다.

제25조(투표지) 투표지의 교부 때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뒤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참관인)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케 할 수 있다.
2.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뒤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해야 한다.

제28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제29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있는 투표지

제30조(당선)

1. 본부장과 수석부분부장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본부장, 수석부분부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보다 많은 표를 확보한 후보팀이 당선된다.
3. 부분부장과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4.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단, 회계감사 입후보자 중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순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완료 즉시 당선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31조(재선거)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32조(보궐선거)

1. 본부장 유고 때는 2개월 이내에 보궐 선거로 본부장을 선출해야 한다.
2. 본부장을 제외한 임원이 유고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대의원회의에서 보선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6절 이의신청

제33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뒤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34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노조 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반,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해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해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해 집행위원회로 이관, 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언론노조 규약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수석부분부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 본부장

소 속 : _____

직 위 : _____

성 명 : _____

성 별 : _____

생년월일 : _____

■ 수석부분부장

소 속 : _____

직 위 : _____

성 명 : _____

성 별 : _____

생년월일 : _____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수석부분부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추천자 성명

번호	소속	성명	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수석부분부장 입후보자 등록 필증

■ 입후보자

1) 본부장 후보

소 속 : _____

직 위 : _____

성 명 : _____

성 별 : _____

생년월일 : _____

2) 수석부분부장 후보

소 속 : _____

직 위 : _____

성 명 : _____

성 별 : _____

생년월일 : _____

위 동지들이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수석부분부장
입후보자로 등록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 실시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 대 본부장·수석부분부장 입
후보자를 선거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 력
			부서	직위			
1	본 부 장 후 보						
	수석부분부장후보						
2	본 부 장 후 보						
	수석부분부장후보						
3	본 부 장 후 보						
	수석부분부장후보						

년 월 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선거관리위원회 직 인 (전면)
-----------------------	----------------------------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본부장·수석부분부장 선거

기호	직위	성명	기표
1	본부장후보	홍길동	
	수석부분부장후보	홍길동	
2	본부장후보	홍길동	
	수석부분부장후보	홍길동	

(후면)

■ 단일 후보시

제 대 본부장·수석부분부장 선거

본부장후보
수석부분부장후보

찬 성	반 대

(후면)

투표참관인증

기호 번 ○○후보자

소 속 :

성 명 :

위 조합원은 본부 본부장·수석부분부장에 입후보한 기호 ○번
후보자의 투표 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 수석부분부장 선거 결과 보고

년 월 일 실시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 · 수석부분부장 선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본부장 · 수석부분부장 후보				
2	본부장 · 수석부분부장 후보				
3	본부장 · 수석부분부장 후보				

년 월 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수석부분부장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 실시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 · 수석부분부장 선거 결과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 결과

기 호		성 명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본부장 · 수석부분부장 후보				
2	본부장 · 수석부분부장 후보				
3	본부장 · 수석부분부장 후보				

2. 최종 당선인

기호 번 본부후보 ○○○
수석부분부장후보 ○○○

년 월 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11.10.12.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선거관리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직종을 고려한 구역별 중앙위원이 추천하는 자
 - 2. 지부를 대표하여 추천하는 자
 - 3.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며 이전 조합 전임으로 활동하였던 자
- ③사무처는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3조 (위원의 선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임원(본부장, 수석본부장)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내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출석 등의 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추천) ①위원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설립취지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 임원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기한은 임원 입후보등록 전일까지로 한다.

③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제9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선거관리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후보 등록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1조 (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 지침의 해석은 임원추천위원장이 한다.

제2조(경선 제한의 방지) 위원회 구성이후 복수의 임원후보자가 경선을 요청할 시, 위원회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원선거를 위해 절차에 따라 해산하여야 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언론노조 규약·규정, 언론노조 KBS본부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 이 지침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금 운영세칙

2011년 3월 31일 제4차 대위원회 제정

2016년 2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부 규정 제5조 및 제41조에 따라 본부의 목적 달성과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본부(지부)비, 조합원 기타 일반인의 기탁금, 이월금, 기타 잡수입의 일부
2. 특정 목적을 명시한 기탁금의 경우 그 목적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3. 각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해당 기금으로 귀속시킨다.

제3조(기금의 목적) 기금은 본부(지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쟁위 및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1. 본부(지부)의 결정 또는 지시에 따른 파업 및 투쟁을 집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2. 본부(지부)의 결정 또는 지시에 따른 파업 및 투쟁으로 발생하는 제 소송비용
3. 기타 본부(지부)가 인정하는 활동지원 및 투쟁 사업비용

제5조(기금의 집행)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한다.

1. 기금의 지출규모는 투쟁방침에 따른 본부·지부·분회의 파업규모, 파업형태, 파업기간 및 구체적인 전술 운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2. 지출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본부장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투쟁기금을 지급했을 때, 본부장은 이를 차기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동일 건에 대해 연속하여 투쟁기금을 지출 할 때는 반드시 집행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연대지원)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이 아니 단체에 대해서도 제5조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제7조(결산)

1. 기금은 투쟁 종료 15일 이내에 투쟁활동 보고와 함께, 기금 사용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2. 사무처는 기금 사용내역을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미비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경조금 지급 운영세칙

2106.2.24. 제정

제 1 조 【목 적】

이 운영 세칙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과 그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본부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부 조합원 및 그 가족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지 아니하면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구 분】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축의금
2. 조의금
3. 포상금

제 4 조 【지급기준】

1. 경조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2. 정년 조합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3.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예외를 요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
4. 유보 조합원의 경우 화환 및 근조기(조화)만 지원한다.

제 5 조 【지급신청】

1. 경조금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조합원 가운데 경조사유가 발생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조사의 경우는 조합비 납부와 관계없이 가입 직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2.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본부 실, 국장 또는 본부 중앙위원(지부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하여 경조금을 신청한다.
3. 이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1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 6 조 【지급방법】

1.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경조금 지급 기준표 >

(2011. 1. 20~ 현재)

단위: 원

내역	지원사유	지급액	비고
축의금	본인결혼	20만원	※ 화환배송 ※ 화환배송시 10만원 차감 후 지급 ※ 본인요청시 축의금만 지급
	자녀결혼	10만원	
	자녀출산	5만원	
조의금	본인사망	200만원	※ 근조기(조화)배송 ※ 근조기(조화)배송시 10만원 차감 후 지급 ※ 본인요청시 조의금만 지급 ※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근조기(조화) 배송시에도 조의금 전액 지급
	배우자사망	100만원	
	부모, 자녀사망	30만원	
	배우자부모사망	30만원	
	형제자매사망	10만원	
포상금	정년조합원	안식년 기간동안 납부한 일반조합비 + 10만원 (안식년 예외자 : 퇴직전 1년간 납부한 일반조합비 + 10만원)	
	모범조합원	10만원	

※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 외조부모 사망 : 근조기(조화) 배송

※ 근조기는 수도권 및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만 배송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평등위원회 운영세칙

2108. 1. 17.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과 같다. (별표1 참조)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에게 적용되며,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본부 수석부분부장으로 한다.
2.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본부 성평등국장으로 한다.
3. 각 지부에는 1인 이상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지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4.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5조(기능)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공사의 관행 및 제도 개선 요구
2.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실태 파악, 피해자보호 등 대응방안 모색 및 공사에 조사 요구, 공사의 인사 조치 감시 및 대응
3. 채용, 인사, 업무상의 성차별에 대한 공사의 조치 및 제도적 방안 요구

4. 출산, 육아 등 부모 역할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제언
5. 공사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6. 기타 성평등을 위한 제반 조치 및 제언

제6조(처리절차)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피해자등이 여러 사정으로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리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등의 사전 동의를 구한 대리인이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피해 사실 파악 후 공사에 조사 요구 등 피해자등이 원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4.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조력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피해자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여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 유지)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하여 피해자등이 실태 파악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실태 파악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활동보고) 위원회의 활동은 매년 1회 정기 대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9조(시행)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를 포함한다)
-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